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희생자유족과 미국 군인 간 화해 지원 등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7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6.
3. 회 부 일 : 2025.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노근리 사건(1950년 7월 25일~29일)은 영동전투(1950년 7월 22일~29일)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영동전투는 무려 8일간에 걸친 성공적인 방어전투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시간을 확보하여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고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중요한 전투임.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에도 참전비 건립이나 영동전투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전 미군 치유와 명예회복이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과 화해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노근리사건 전후의 영동전투까지 확대하며, 국가의 책무에 영동전투 참전 미국군인에 대한 위령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들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u>명예회복</u> 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u>명예회복과 화해</u> 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u>회복시켜 줌으로써</u> 인권신장과 <u>국민화합</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회복하고</u> , <u>영동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을 위로함으로써</u> -- <u>국민화합, 세계평화</u> <u>번영에</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영동전투 참전 군인</u> ”이란 1950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있었던 <u>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의 전투에 참전한 미국 군인</u> 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제3조(국가의 책무) ----- -----

조치를 시행하고, <u>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u>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u>영동전투 참전 군인 위령 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함으로써</u> -----.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u>명예회복 등을</u>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 ----- <u>명예회복,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 또는 그 유족 간의 화해 등을</u> -----. 1. <u>추념 행사의 거행</u> 2. <u>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u> 과 <u>위령탑·사료관 건립</u> 3. <u>관련 유적의 보존·관리</u> 4. <u>관련 연구 및 교육</u> 5. <u>그 밖의 기념사업과 치유, 화해 협력에 관한 사업</u>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u>위하여</u>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 ----- ----- ----- <u>위하여 노력하고, 희생자·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들 간의 화해를 위하여</u>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하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 3월 제정되었음.¹⁾

이후 2021년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자문기구 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²⁾ 주된 관점은 변함없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집중되어 왔음.

《 노근리사건 개요 》

□ 사건개요

- 한국전쟁 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세적인 전투상황에서 철수 중이던 미군이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길과 쌍굴 주변에서 공중공격 및 지상사격으로 피난민들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힌 사건

1) 2004년 제정 당시에는 노근리사건의 시간적 범위를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사건이 종료된 7월 29일이 포함되지 않아 당일 희생자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일부개정을 통해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변경되었음.

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86호, 2021.10.19., 전부개정]」 개정 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되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재개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 진상 규명 과정

- 1999년 9월 29일 AP통신의 탐사보도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되었고,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노근리사건 조사가 시작됨
- 한국과 미국정부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각각 진상조사 실시, 2001년 1월 12일 ‘한·미 공동발표문’ 발표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민과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서를 발표

□ 진상조사 결과

- 2024년 3월 5일 동법 제정
- 2005년, 2008년, 2023년 총 3차례에 걸친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과 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부상자) 65명 등 총 228명의 희생자와 2,240명의 유족 결정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2023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pp.1~4.를 참고하여 작성

그런데, 미국 군인은 노근리사건에서 원인 제공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이를 포함하는 영동전투와 한국전쟁 전체로 볼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였는바, 이들을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한편, 희생자 및 유족과의 화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노근리사건을 포함한 8일간의 영동전투³⁾에서 미군이 시간을 벌어준 덕에 우리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인천상륙작전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근리사건 75주기를 맞아

3)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영동전투(1950년 7월 22일~7월 29일)는 노근리사건(1950년 7월 25일~7월 29일)을 포함하는 8일간의 방어전투로, 이를 통해 낙동강 방어선 구축시간을 확보하여 한국전쟁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미국 군인 400여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미국 군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과 화해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노근리사건 전후의 영동전투까지 확대하며, 국가의 책무에 영동전투 참전 미국 군인에 대한 위령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군인들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영동전투 참전 미국 군인도 역사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점,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감당한 역할과 기여, 미래지향적인 한미 상호협력관계 형성의 중요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봄.

다만, 이 법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 군인을 위령 사업 등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임.⁵⁾

4) KBS뉴스, “미국이 응답한 6·25 노근리 사건…제주4·3은?”, 2025.7.25.

5) 안 제3조는 국가의 책무로 영동전투 참전 군인에 대한 위령 사업 등의 실시 또는 지원을 규정하려는 바, 외국 군인에 대한 위령 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보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우선하는 일반적인 국가의 의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안 제14조가 영동전투 참전 군인에 대한 추념행사 거행, 위령 공원 및 묘역의 조성 등을 노근리 사건 관련 범인의 목적에 추가하여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사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지원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한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국 군인을 포함한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선양사업 및 추모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동전투 참전 미국 군인들만을 위한 위령사업 등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⁶⁾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참전 미군에 대한 지원은 이 법의 범위를 희생자와 유족에서 미국 군인까지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입법 취지, 유족 간 합의, 다른 한국전쟁 전후의 유사한 집단 희생사건들에 미칠 파급효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6)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2. "유엔참전용사"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엔참전국"이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①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②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6·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국방부는 6·25전쟁 참전 미군에 대한 치유 및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이 법의 노근리사건 및 희생자 정의규정을 볼 때,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위령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개정안의 내용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